

성과연봉시행세칙

[제목개정 2009.4.28.]

제정 2007.12.24	개정 2018.03.01
개정 2009.04.28	개정 2020.06.29
개정 2012.02.08	개정 2020.08.25
개정 2013.01.16	개정 2021.02.17
개정 2013.04.23	개정 2021.05.13
개정 2013.08.13	개정 2022.11.02
개정 2014.01.21	
개정 2014.12.10	
개정 2016.09.26	
개정 2017.04.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연봉제규정 제15조 성과연봉 (이하 “경영성과급” 이라 한다.)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8., 2016.9.26.>

제2조(적용범위) 경영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6.9.26.>

제 2 장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제3조(지급대상) ① 경영성과급 지급대상자는 전년도 12월 31일(이하 “지급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 지급대상 기간(전년도 1년간) 중 4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며, 적용대상은 “별표 1” 에 따른다. <개정 2009.4.28., 2013.4.23., 2014.1.21., 2014.12.10., 2016.9.26., 2017.4.11., 2020.8.25., 2022.11.2.>

②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단, 인사규정 제38조 제2항에 해당되는 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2017.4.11.>

③ 지급대상 기간 중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휴가(출산전후휴가 및 공무상 병가 제외),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 신규임용, 교육훈련(연수) 파견기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4개월 미만인 자,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징계 처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 채용비리)을 받은 자, 1년간 근무성적평정 결과 평균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0.> <개정 2017.4.11., 2020.6.29., 2021.5.13., 2022.11.2.>

제4조(지급단위) ①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직위별(지급기준일 현재 직위)로 지급 등급을 적용하며, 등급별 지급액은 직급별 월평균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6.29., 2022.11.2.>

② <개정 2017.4.11.> <삭제 2022.11.2.>

- ③ 공무직은 별도의 직위로 구분하여 지급 등급을 적용하며, 등급별 지급액은 공무직의 월평균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2.11.2.>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1.2.>

- 제5조(지급등급)** ① 경영성과급의 지급등급과 등급별 지급률은 “별표1” 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3.4.23., 2016.9.26.>
-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등급별 인원비율을 5% 포인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 ③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S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8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 ④ 지급단위기관내의 직위별(공무직 별도)로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한다. <개정 2017.4.11., 2022.11.2.>
 - 1.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다.
 - 2. 지급등급별 인원 합계가 현원을 초과 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 한다.

제6조(지급기준액) 삭제 <2016.9.26.>

- 제7조(평가방법)** ① 개인별 지급등급은 인사규정 제32조(근무평정)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결과 등에 의하여 결정하되, 반영비율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경영목표이행실적평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16., 2013.4.23., 2016.9.26., 2017.4.11.>
- ②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재단의 성과평가결과(예: 팀별 목표달성도 평정점)등 별도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7.4.11.>
 - ③ 대표이사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등 별도의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달리 할 수 있다.

제8조(다면평가) 삭제 <2013.1.16.>

- 제9조(순위명부 작성)** ① 개인별 평가에 의한 개인별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단위별로 직위별 경영성과급 지급 순위 명부 “별지 1호 서식” 을 작성한다. 동점인 경우에는 동순위로 한다.<개정 2016.9.26., 2022.11.2.>
- ② 삭제 <2014.12.10.>

- 제10조(성과연봉 지급)** ① 대표이사는 익년 1월말까지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을 완료하고, 임·직원의 경영성과급은 매년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09.4.28., 2013.4.23., 2016.9.26., 2017.4.11., 2018.03.01.>
- ② 지급대상자 중 지급대상 기간 내 근무기간이 4개월 이상인 자는 “별표 1” 의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4.12.10.> <개정 2017.4.11.>
 - ③ 성과연봉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8., 2014.12.10.>

부칙(2007.12.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4.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예산 확보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6.)

이 세칙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3.)

이 세칙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1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21.)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2.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 발령 사항은 2015년 지급 성과연봉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9.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4.11.)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1.)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9.)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25.)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17.)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5.13.)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무원의 경영성과급 지급은 예산 확보 이후 적용한다.

[별표 1] (제5조 관련) <개정 2009.4.28., 2013.4.23., 2013.8.13., 2014.12.10., 2016.9.26., 2017.4.11., 2021.2.17., 2022.11.2.>

경영성과급적용대상

종 류	적 용 대 상
대표이사, 개방형임기직, 일반직, 전문계약직, 공무원	임·직원

경영성과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대표이사)

경영평가결과	“가” 급	“나” 급	“다” 급	“라” 급	“마” 급	“바” 급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지 급 액	대표이사 월평균 연봉액 ×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등급에 따른 확정 지급률					

※ 지급액은 월평균 연봉액 기준임.

경영성과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개방형임기직, 일반직, 전문계약직)

지 급 등 급		지 급 액
등급	지급인원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직급별 월평균연봉×(경영평가 확정지급률+35% 이상)의 해당금액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직급별 월평균연봉×(경영평가 확정지급률+15% 이상)의 해당금액
B등급	평가결과 상위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직급별 월평균연봉×(경영평가 확정지급률-15% 이상)의 해당금액
C등급	평가결과 상위 80퍼센트 초과에 해당하는 자	직급별 월평균연봉×(경영평가 확정지급률-45% 이상)의 해당금액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대표이사는 지급인원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경영성과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공무원)

지 급 등 급		지 급 액
등급	지급인원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 월평균기본급×(경영평가 확정지급률+35% 이상)의 해당금액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 월평균기본급×(경영평가 확정지급률+15% 이상)의 해당금액
B등급	평가결과 상위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 월평균기본급×(경영평가 확정지급률-15% 이상)의 해당금액
C등급	평가결과 상위 80퍼센트 초과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 월평균기본급×(경영평가 확정지급률-45% 이상)의 해당금액

※ 대표이사는 지급인원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